



격투기 공인허가기구 면허 신청서

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지시사항을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부실한 신청서는 반려되며 면허 교부가 지연됩니다. 신청서 또는 부속 서류에 누락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거나 충실히 밝히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면허가 발급되더라도 추후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격투기 공인허가기구 면허(Combative Sport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License)의 수수료는 얼마이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인허가기구(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면허의 수수료는 \$1,000이며,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Combative Sport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License의 증권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는 다음을 마련해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의 지급, 인쇄 입장권과 광고 문건의 정당한 경비를 조건으로 하고 또 보장하는 \$20,000 상당의 증권
- 공인허가기구의 일반기업법(General Business Law) 41조와 위원회 규칙 및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또 보장하는 \$10,000 상당의 증권

결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Department of State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보내지 마십시오.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부도 수표에 대해서는 \$20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주체육위원회(State Athletic Commission)에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편 주소: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State Athletic Commission
P.O. Box 22090
Albany, NY 12201-0001

개인정보보호 고지

신청서에 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까?

예. State Athletic Commission은 모든 면허 발급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보관할 권한은 세법(Tax Law) §5와 일반의무법(General Obligations Law) §3-503에 근거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재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 세액을 과소평가한 개인과 기업 등을 찾아내고 재무국장(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이 관장하는 세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정보는 조세 행정 목적과 기타 Tax Law에서 인정하는 목적에 사용되며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IV-D편에 따라 설립된 뉴욕 주 또는 다른 주의 자녀 양육비 집행기관이나 그 공식 대리인이 양육비 명령을 구하거나 변경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또한 뉴욕 법, 규칙, 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9 §207.5(a)(1)에 의해서도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또한 123 William Street, New York, NY 10038-3804에 소재한 위원회의 면허 정보 시스템에서 유지됩니다.



격투기 공인허가기구 면허 신청서

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지시사항을 읽으세요. 답변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써야 합니다. *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 격투기 종목을 선택하세요(해당 항목 모두 선택), 등록 수수료 \$1,000

프로

- 킥복싱
- 무에타이
- 레슬링/그래플링
- 유도
- 태권도
- 가라데
- 캠프

아마추어

- 종합격투기
- 킥복싱
- 무에타이
- 레슬링/그래핑
- 유도
- 태권도
- 가라데
- 캠프

* 신규 면허 신청입니까, 아니면 등록된 정보의 수정/변경입니까?

(택일) 신규(수수료 \$1,000) 변경(수수료 없음)

업체 정보

*업체명		연방고용주식별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			
가명: (사업체가 가명, 상호 또는 별칭(Doing Business As, DBA)으로 신고하는 경우, 각각을 기재하세요. 기재된 각각의 가명을 신청한 관할지에서 발급한 가명 또는 DBA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체 주소 1			사업체 주소 2		
*시	*미국 주 또는 캐나다	*우편번호	*카운티	*국가	
*사업체 전화 번호			*사업체 전자메일 주소		
사업체 팩스 번호			사업체 웹사이트		
*기본 연락 담당자명		*기본 연락 담당자 이메일 주소		*기본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체 배경 정보(사업체 전용)

1) *사업체는 NYS 체육위원회(NYS Athletic Commission) 또는 기타 체육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각 면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면허 종류	발급 주(미국에 한함)	발급국가	면허번호	면허년도
-------	--------------	------	------	------

2) *사업체가 뉴욕 주 또는 기타 주에서 발급받은 면허 또는 허가가 철회, 정지 또는 거부되거나 기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설명하십시오.

격투기 공인허가기구 면허 신청서

3) *사업체가 프로 격투기 참가자, 감독, 보조자, 트레이너, 프로모터 또는 주선자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성명:	금전적 이해관계의 내용:
-----	---------------

4) *사업체가 어느 세무 당국에게든 체납한 세금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설명하세요.

--

기타 제출하고 싶은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세요.

5) *사업체가 현재 부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설명하세요.

--

기타 제출하고 싶은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세요.

사업체 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체 소유주와 이사, 간부는 모두 본 신청서의 "책임자 정보", "책임자 배경" "재무정보"란을 복사해 작성해야 합니다.

책임자 정보

*업체명			
*책임자 이름	*책임자 성	중간 머릿글자	호칭
*책임자 직위(신청인이 업체인 경우)			

책임자 배경 정보

1) *귀하는 NYS Athletic Commission 또는 기타 체육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소지한 각 면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면허 종류	발급 주(미국에 한함)	발급국가	면허번호	면허년도
-------	--------------	------	------	------

2) *귀하가 현재 책임자이거나 책임자로 있었던 사업체가 뉴욕 주 또는 기타 주에서 발급받은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철회되거나 정지 또는 거부되거나 기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설명하십시오.

--

3) *뉴욕 주 또는 다른 곳에서 경범죄 또는 중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유죄 각각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판결년도	유죄가 확정된 관할지역	유죄판결을 받은 죄목
------	--------------	-------------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장애회복증명서(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ies)나 특별사면증명서(Executive Pardon), 선행증명서(Certificate of Good Conduct)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격투기 공인허가기구 면허 신청서

4)* 뉴욕 주 또는 다른 곳에서 (경범죄 또는 중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각 사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기소연도	기소가 제기된 관할지역	죄목(기소의 성격)	기소 현황
------	--------------	------------	-------

5) *도박과 관련된 채무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설명하십시오.

6) *프로 격투기 참가자, 감독, 보조자, 트레이너, 프로모터 또는 주선자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세요.

성명:	금전적 이해관계의 내용:
-----	---------------

경력

1) *를 발급받고자 하는 격투기 종목을 주관해 본 경험을 기술하세요.

2) *최근 5년 사이 주관한 행사를 기재하세요. 각 행사의 일자, 장소, 종목을 밝혀야 합니다.

3) *아래 제시된 분야 각각에 대해 별도 첨부문서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세요.

- a. 신청 사업체의 사명과 주된 목적
- b. 선수가 사용하는 손, 발, 사타구니 보호대, 기타 안전장구에 관한 정책과 규칙, 요건
- c. 참가자가 심각한 응징을 당하거나 심각한 신체 부상을 입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해당 종목을 중지하는 정책과 규칙, 요건
- d. 다친 사람을 제때에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정책과 규칙, 요건
- e. 시합, 대회, 경기 또는 시범행사 시 유자격 의사의 상주 및 책임에 관한 정책과 규칙, 요건
- f. 참가자의 기량 향상 약물과 불법 물질 사용에 관한 정책과 규칙, 요건
- g. 심장 및 신경 검사를 포함해 유자격 의사의 경기 전 신체검사에 관한 정책과 규칙, 요건
- h. HIV, 간염 등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경기 전 검사에 관한 정책과 규칙, 요건
- i. 응급의료인력, 장비, 구급차 후송에 관한 정책과 규칙, 요건
- j. 선수를 위한 사고 보험 제공에 관한 요건, 허가기구의 요건이 위원회 규정(Commission's Regulations) §208.16에 명시된 격투기 시행 최소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명
- k. 신청인에게 경기 또는 시범경기의 허가를 구하는 프로모터를 허가기구가 검토 및 승인 또는 거절하는 정책과 규칙, 요건
- l. 허가받은 경기 또는 시범경기 심판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허가기구의 정책과 규칙, 요건
- m. 본 신청서를 통해 인가받기를 원하는 각 격투기 종목의 진행에 관한 허가기구의 필수 규칙과 규정 사본

4)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프로 또는 아마추어 무에타이나 프로 또는 아마추어 킥복싱 허가기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부속서류에 기재된 기준과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격투기 공인허가기구 면허 신청서

확인서

신청인은 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1. 신청인은 면허 기간 종료 시점까지 뉴욕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면허 기간 종료 시점까지 주, 허가기구 또는 복싱위원회연합(Association of Boxing Commissions) 회원에게 의학적 출장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신청인이 주관하는 격투기 경기 또는 시범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면허 기간 종료 시점까지 뉴욕 주 안에서 주관할 수 있는 면허와 허가를 획득한 격투기 경기 및 시범경기에 대해 보충 지침(Supplemental Instructions)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면허 기간 종료 시점까지 뉴욕 주의 관련 법과 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의 관련 규칙, 규정, 명령을 모두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프로 격투기를 주관하고 시행하는 공인허가기구(Authorized Sanctioning Entity)로서 면허를 청구하는 신청인에 대한 증권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의 증권 \$20,000

공인 프로 격투기의 주관과 시행에 관여하고자 하는 공인허가기구는 각각 금전의 지급, 인쇄 입장권과 광고 문건의 정당한 경비를 조건으로 하고 또 보장하는 \$20,000 상당의 증권을 마련하여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20,000 상당의 보증증권 또는 증권 연속 또는 증권 효력의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보증증권(Surety Bond) 만료일 _____ 또는 Surety Bond는 자동 갱신 예정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의 이행 보장 증권 \$10,000

공인 프로 격투기의 주관과 시행에 관여하고자 하는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는 각각 공인허가기구의 일반기업법(General Business Law) 41조와 위원회 규칙 및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또 보장하는 \$10,000 상당의 증권을 마련하여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10,000 상당의 보증증권 또는 증권 연속 또는 증권 효력의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보증증권(Surety Bond) 만료일 _____ 또는 Surety Bond는 자동 갱신 예정

확인서

신청자 확인: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필요한 증권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뉴욕 주의 법과 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의 규칙 및 규정(Rules and Regulations)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는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State Athletic Commission이 검토 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본 신청서의 제출로 면허 신청 대상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나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기재된 정보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본인은 본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또 본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면 본 면허 신청서를 즉시 수정하여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State Athletic Commission에 변경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신청서에 따라 발급된 면허가 양도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정자로 기재)

X

신청인 서명

일자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세요.

- 본 신청서 "사업체 배경 정보"와 "책임자 배경 정보"란에 제시된
- 질문에 대한 답을 뒷받침하는 서류
- 본 신청서 경력 란에서 요구하는 정보
- 필수 증권
- 신청 수수료(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



아마추어 종합격투기(MMA) 제재 법인 면허 신청 추가물

아마추어 MMA에 대한 귀하의 격투기 인증 법인 면허(Combative Sport Authorized Entity License) 신청은 다음 최소 기준을 포함 및/또는 충족해야 하며, 신청 추가물은 이러한 최소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1. 자격을 갖춘 선수, 경기 승인 및 거부 기준
2. 승인된 경기장(케이지, 링, 크기, 구조 등) 및 경기 전 점검 기준
3. 필수 핸드 래핑, 승인된 방법, 재료 및 금기사항 기준
4. 득점 방법 및 경기 결정 기준
5. 지혈을 위해 승인된 물품 기준
6. 경기력 향상 약물 및 불법 물질 사용 금지 기준
7. 출장 정지, 선수 의무 회복 기간 및 시행 기준
8. 국가 ID 카드를 처음 확보하기 전 아마추어 선수의 출전 금지 기준
9. 출장 정지 기간 중 선수의 경기 참여 금지 기준
10. 18 세 미만 선수의 경기 참여 금지 기준
11.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 간 경기 금지 기준
12. 모든 프로모터가 MMA.TV 에 경기를 등록하고 경기 1 영업일 이전에 카드에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하는 기준

종합격투기 프로모터는 복싱 위원회 연맹 공식 종합격투기 등록부(Association of Boxing Commissions Official Mixed Martial Arts Registry)에 계정을 생성하고 사전에 경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모터는 Mixed Martial Arts LLC 웹사이트 <http://abc.mixedmartialarts.com>을 방문해야 합니다.
2. "Request Promoter Credentials"("프로모터 자격 인증 요청") 링크를 선택하면 <http://abc.mixedmartialarts.com/?fa=login.RequestCred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Mixed Martial Arts LLC 가 프로모터와 직접 협력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향후 경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13. 경기 전 1 영업일 이내에 경기 카드 변경 금지 기준
14. 매 라운드 3 분 경기 후 최소 60 초 휴식 기간, 다음 라운드 시작 전 15 초 경고 신호, 총 3 라운드의 아마추어 경기 기준
15. 표준 체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이급(Flyweight)	125 파운드 이하
밴텀급(Bantamweight)	126-135 파운드
페더급(Featherweight)	136-145 파운드
라이트급(Lightweight)	146-155 파운드
웰터급(Welterweight)	156-170 파운드
미들급(Middleweight)	171-185 파운드
라이트헤비급(Light Heavyweight)	186-205 파운드
크루저헤비급(Cruiser Heavyweight)	206-230 파운드
헤비급(Heavy Weight)	231-265 파운드
슈퍼헤비급(Super Heavyweight)	265 파운드 초과

16. 체중 측정 시기와 경기 시작 사이 1%를 초과하는 체중 감량 금지 기준
17. 두 경기 이하에 참가한 선수를 위한 "Novice Division Rules"("초급자 규정") 또는 세 경기 이상의 확인된 경기(인증된 위원회 또는 국가 인증 제재 기관이 규제)에 참가한 선수를 위한 "Advance Division Rules"("고급자 규정")를 사용해 경기해야 하는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요건 기준
18. 세 경기 이상의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novice division rules 를 사용해 경기하도록 허용하고 두 경기 이하의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고급자 규정을 사용해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
19. Advance Division Rules 에 대한 반칙 기준(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dvanced Division Rules:

a. 펜스 또는 로프를 잡고 있는 행위

선수는 언제라도 손을 펜스에 두거나 뺄 수 있습니다. 선수는 언제라도 케이지에 발을 두거나 발가락이 펜스를 넘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 케이지를 넘어가 펜스를 붙잡고 자신의 신체 부위 또는 상대 선수의 신체를 제어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불법 행위가 됩니다. 선수는 언제라도 로프를 붙잡거나 링 로프에 팔을 감을 수 없습니다. 선수가 펜스, 케이지 또는 링 로프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는 경우, 이러한 반칙으로 인해 테이크다운을 피하는 등의 중요한 위치 변화가 발생했다면 심판은 해당 선수의 득점표에서 1 점 감점을 선언해야 합니다. 펜스를 붙잡은 행위에 대한 점수 감점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반칙으로 인해 해당 선수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심판은 선수들을 중립 위치에 다시 서도록 해야 합니다.

b. 상대 선수의 반바지 또는 글러브를 붙잡는 행위

선수는 상대 선수의 반바지 또는 글러브를 붙잡아 상대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선수는 실제로 상대 선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글러브 겉만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의 손을 제어하고 있지 않는 한, 상대 선수의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반바지 또는 글러브를 잡을 수 있습니다.

c. 머리로 들이받는 행위

머리를 사용해 상대의 머리 또는 다른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d. 눈을 찌르는 행위

손가락, 턱, 팔꿈치 등으로 눈을 찌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수의 눈구멍과 접촉하는 합법적 가격 또는 펀치는 눈 찌르기가 아니며 합법적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e. 상대 선수를 물거나 침을 뱉는 행위

모든 형태의 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선수는 심판이 일부 행위를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경기 중 물리면 심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f.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g. 피시 후킹(Fish hooking)

선수가 상대 선수의 입, 코 또는 귀를 공격하는 한 방법으로 손가락을 사용해 해당 부위의 피부를 잡아당기는 것은 "Fish-Hooking(피시 후킹)"으로 간주됩니다.

h. 모든 종류의 그로인 어택(groin attack)

사타구니 부위의 가격, 붙잡기, 꼬집기 또는 비틀기 등을 포함한 모든 공격은 불법입니다.

i. 상대 선수의 구멍, 상처 또는 찢어진 틈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

선수는 상처를 확대하기 위해 찢어진 부위에 손가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선수는 상대 선수의 코, 귀, 입 또는 기타 신체 구멍에 손가락을 넣을 수 없습니다.

j. 팔꿈치로 신체 부위 가격

k. 작은 관절 공격

손가락과 발가락은 작은 관절입니다. 손목,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는 큰 관절입니다.

l. 척추 또는 뒤통수 가격

목 뒤쪽 부위에서 귀 상단까지의 가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 윗부분의 허용 가능한 가격에는 귀 상단에서 정수리까지의 모호크 부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수리는 머리가 곡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정수리 뒤와 귀 윗부분은 모호크 부위 내에서 가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m. 뒤통치로 신장을 걷어차는 행위

n. 모든 종류의 목 가격

규제되는 공격에는 가격을 위해 목이 보이도록 상대 선수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선수는 상대 선수를 항복시키기 위해 손가락 또는 엄지로 상대 선수의 목 또는 기도를 찌를 수 없습니다.

o. 살을 핥거나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 또는 쇄골을 잡는 행위

고통을 주기 위해 피부를 핥거나 잡아당기거나 비트는 공격은 불법입니다. 모든 종류의 쇄골 공격은 반칙입니다.

p. 바닥에 쓰러진 상대 선수의 머리를 차는 행위

q. 상대 선수의 머리를 무릎으로 치는 행위

r. 바닥에 쓰러진 선수를 짓밟는 행위

밟는 행위는 발로 가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선수가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들어 올려 발바닥 또는 뒤통치로 가격하는 것입니다. 내려차기는 밟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서 발 구르는 것은 반칙이 아닙니다. 서 있는 선수가 발을 구르는 것은 이 반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 경기장 안에서 모욕적인 언어 사용

t. 특히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

u. 휴식 시간 중에 상대 선수 공격

선수는 타임아웃 또는 휴식 시간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 선수와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v. 심판 또는 의사의 관리하에 있는 상대 선수 공격

w. 소심함(Timidity)

소심함(timidity)은 선수가 의도적으로 상대 선수와의 접촉을 피하거나 격투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소심한 행동은 거짓으로 반칙, 부상을 주장하거나 고의로 마우스피스를 떨어뜨리거나 격투를 피하기 위한 다른 행동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선수에 대해 심판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x. 수건 던지기를 포함한 코너맨의 방해

방해는 격투를 방해하거나 한 선수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코너맨은 심판을 방해하거나 심판 또는 기타 관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y. 상대 선수를 케이지 또는 링 격투 구역 밖으로 던지는 행위

z. 심판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aa. 상대 선수의 머리 또는 목을 바닥에 박는 행위

상대 선수의 신체를 제어한 다음 강제로 상대의 머리 또는 목을 바닥에 밀어 넣는 모든 행동은 불법 스파이킹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스파이킹 동작의 예로 파일 드라이버, 스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파일 드라이버는 상대 선수의 머리를 수직으로 내리고 다리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 상대 선수의 신체를 제어한 다음 강제로 상대의 머리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스플렉스에는 몇 가지 변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대 선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린 다음 그 체중을 이용해 상대의 머리 또는 목을 바닥으로 던지는 행위입니다.

선수가 상대 선수에 의해 서브미션 홀드(submission hold)에 놓였으며 상대 선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상대 선수의 신체를 제어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 선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서브미션을 시도하고 있는 선수는 바닥에 던져지기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홀드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bb. 비무장 격투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린 후 상대 선수를 공격하는 행위

cc. 무릎 관절의 직선 차기

dd. 넥 크랭크(neck crank)

크랭크로 선수의 목이 위험해지도록 하는 홀드는 불법입니다. 선수가 가드 자세를 취한 채 가드를 풀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Can Opener"("캔 오프너") 또는 "Bulldog"("불독")과 같은 넥 크랭크는 불법적인 목 공격의 예입니다.

ee. 모든 다리 비틀기 서브미션

힐 훅(heel hook)과 토 홀드(toe hold)는 금지됩니다. 스트레이트 니 바(straight knee bar)와 스트레이트 앵클 락(straight ankle lock)은 허용됩니다.

ff. 스파인 락(spine lock)

gg. 경기 직전 또는 경기 중에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물질(머리카락, 신체, 옷 또는 글러브)에 사용하는 행위

Novice Division Rules

a. 초급 선수는 신가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b. Advance Division Rules 에 나열된 반칙과 더불어 다음 행위는 초급자의 반칙에 해당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상대 선수의 머리 가격

바닥에 쓰러진 상대 선수는 발바닥 이상을 바닥에 대고 있는 선수를 말합니다. 선수가 쓰러졌으나 케이지 펜스에 걸쳐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를 바닥에 쓰러진 선수로 취급할 것을 선수들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면허 교부 즉시, 면허 소지자에게는 MMA 데이터베이스 등록부(abc.mixedmartialarts.com)에 사용자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등록부는 선수 이력 조사, 입력된 경기 추적, 선수 출장 정지 확인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stats@mixedmartialarts.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뉴욕 주 체육위원회(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 NYSAC)는 모든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선수들에게 MMA 국가 ID 카드를 발급합니다. 참가자는 NYSAC 웹사이트 www.dos.ny.gov/athletic 을 방문하여 MMA 국가 ID 카드 신청서 및 지침을 수령해야 합니다.



무에타이 제재 기구 면허 신청 보충자료

무에타이용 격투기 승인 단체 면허(Combative Sport Authorized Entity License) 신청은 반드시 아래 기재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보충자료 또한 동일한 최소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1. 자격 대상 선수, 경기 승인 및 거부에 관한 기준
2. 승인된 경기장(치수 및 건축 등) 및 경기 전 점검에 관한 기준
3. 핸드 래핑 방식, 승인된 방식, 재료 및 금지 사항에 관한 기준
4. 선수 글러브, 승인된 재료, 점검 및 건축 등에 관한 기준
5. 연고 사용에 관한 기준(Vaseline 과 Namman Muay 를 제외한 물질 사용 금지)
6. 득점 방식 및 경기 결정에 관한 기준
7. 출혈 예방을 위한 승인된 준비에 관한 기준
8. 출전 정지, 선수 필수 회복 기간 및 강화에 관한 기준
9. 출전 정지 중인 선수의 경기 참가 금지에 관한 기준
10. 남녀 선수 간의 경기 금지에 관한 기준
11. 경기 전 의식(ritual) 허용에 관한 기준
12. 카테고리 및 부문별 라운드 시간 및 경기 시간에 관한 기준
13. 체급별 최대 허용 중량 차이에 관한 기준
14. 캐치웨이트 경기 승인에 관한 기준
15. 정의된 체급, 부문 및 연령대에 관한 기준
16. 계체와 경기 시작 사이에 1%를 초과하는 체중 감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7. 프로 무에타이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박치기
 - b. 팔꿈치 내려찍기(downward pointed elbow) – 실링 투 플로어(ceiling to floor) 또는 수직 엘보(12-6 elbow) 타격은 금지됩니다.
 - c. 사타구니 타격 – "neb"("넵")이라고 불리는 배꼽 바로 밑 서혜부 부근/하복부 타격은 허용됩니다. 고환(파울킵 부근) 타격은 금지됩니다.
 - d. 무릎 직접 타격 – 선수의 다리 앞쪽을 사이드킥으로 타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e. 뒤통수 타격(래빗 펀치)
 - f. 척추 타격
 - g. 앞쪽 목 타격
 - h. 쓰러진 상대 선수 타격
 - i. 주심 명령에 불복종
 - j. 주심이나 의사가 살피고 있는 상대 선수 타격
 - k. 합법적 클린치 이외의 경우에 상대 선수를 셔빙, 스로잉, 레슬링하는 것
 - l. 주심이 휴식을 외칠 때 타격
 - m. 벨이 울린 뒤 타격
 - n. 로프를 잡거나 무기로 사용 – 초과상을 입히기 위해 상대 선수 얼굴을 로프에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 o. 소극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는 행동
 - p. 모욕적인 언어 또는 제스처 사용
 - q. 마우스 피스 밖으로 반복적인 침 뱉기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
 - r. 손가락으로 안구 누르기(아이 가우징)
 - s.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 t. 깨물기 또는 침 뱉기
 - u. 상대 선수 경기복 잡기
 - v. 선수 코너에서의 방해
 - w. 상대 선수 다리걸기(트리핑) 또는 쓸어 차기(스위핑) – 상대 선수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것은 합법입니다. 무에타이에서 킥은 발 위쪽이나 정강이 앞쪽을 이용한 발차기를 의미합니다. 발 위쪽이나 정강이 앞쪽을 이용하는 한 발을 꺾어 차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 옆면으로 상대 선수의 다리에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x. 허리 던지기(힙 스로우), 업어치기(숄더 스로우), 레그 스로우
 - y. 상대 선수의 척추를 강제로 과신전(hyperextend)시키면서 상대 선수 허리 잡기
 - z. 고의로 상대 선수 위에 낙하하면서 팔꿈치나 무릎으로 상대 선수를 누르기
 - aa. 레슬링, 백 록(back lock) 또는 암 록(arm lock), 유도와 유사한 동작 및 레슬링 홀드
 - bb. 상대 선수를 들어 올려 깔개 위로 던지기
 - cc. 깔개 위로 상대 선수 머리 "pile drive"("파일 드라이브") 시도하기

무에타이 제재 기구 면허 신청 보충자료

- dd. 공격 기술을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킥 캐치 또는 상대 선수를 3 걸음 넘게 밀어내기 - 상대 선수의 킥을 캐치하고 상대 선수의 다리를 붙잡고 세 걸음 까지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e. 상대 선수의 킥 캐치 상태에서 고의로 깔개 위에 낙하하는 것은 금지 - 상대 선수에 대한 어드밴티지로 간주됩니다.
- ff. 쓰러진 상대 선수 밟기

18. 아마추어 무에타이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프로 무에타이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초보 아마추어 부문(경기 경험 2 회 이하)

- 머리에 엘보 타격 금지
- 머리에 무릎 타격 금지
- 헤드 가드, 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바디 프로텍터 착용

b. 고급 아마추어 부문(경기 경험 3 회 이상)

- 팔꿈치 보호대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에 엘보 타격 허용
- 머리에 무릎 타격 금지

19. 신청 승인 후, 대회, 시험, 공개 시험 최소 10 일 전에는 뉴욕 주 체육 위원회(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에 공지해야 합니다.



킥복싱 제재 기구 면허 신청 보충자료

킥복싱용 격투기 승인 단체 면허(Combative Sport Authorized Entity License) 신청은 반드시 아래 기재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보충자료 또한 동일한 최소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1. 자격 대상 선수, 경기 승인 및 거부에 관한 기준
2. 승인된 경기장(치수 및 건축 등) 및 경기 전 점검에 관한 기준
3. 핸드 래핑 방식, 승인된 방식, 재료 및 금지 사항에 관한 기준
4. 선수 글러브, 승인된 재료, 점검 및 건축 등에 관한 기준
5. 연고 사용에 관한 기준(Vaseline 과 Namman Muay 를 제외한 물질 사용 금지)
6. 득점 방식 및 경기 결정에 관한 기준
7. 출혈 예방을 위한 승인된 준비에 관한 기준
8. 출전 정지, 선수 필수 회복 기간 및 강화에 관한 기준
9. 출전 정지 중인 선수의 경기 참가 금지에 관한 기준
10. 남녀 선수 간의 경기 금지에 관한 기준
11. 카테고리 및 부문별 라운드 시간 및 경기 시간에 관한 기준
12. 체급별 최대 허용 중량 차이에 관한 기준
13. 캐치웨이트 경기 승인에 관한 기준
14. 정의된 체급, 부문 및 연령대에 관한 기준
15. 계체와 경기 시작 사이에 1%를 초과하는 체중 감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6. 공격이 가능한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머리 앞 및 옆면
- b. 벨트 위 몸통 앞 및 옆면
- c. 다리 앞/뒤쪽, 무릎 제외

17. 가능한 타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스피닝 백 핸드/피스트
- b.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발이나 정강이 앞쪽을 이용한 레그 킥
- c.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주먹 타격
- d.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스피닝 킥 타격
- e. 공격이 허용된 부위에 무릎 타격

18. 프로 킥복싱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박치기
- b. 팔꿈치 타격
- c. 손바닥 타격(팜 스트라이크)/발꿈치 타격(힐 스트라이크)
- d. 오픈 글로브(open glove) 또는 손목을 이용한 타격
- e. 사타구니 타격
- f. 무릎 직접 공격 - 선수의 무릎 앞쪽을 사이드킥으로 타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g. 스윙핑 이외의 발 공격
- h. 뒤통수 타격(래빗 펀치)
- i. 척추 타격
- j. 앞쪽 목 타격
- k. 쓰러진 상대 선수 타격
- l. 타격을 막기 위해 상대 선수의 손이나 팔을 클린칭 또는 묶기
- m. 주심 명령에 불복종
- n. 주심이나 의사가 살피고 있는 상대 선수 타격
- o. 주심이 휴식을 외칠 때 타격
- p. 벨이 울린 뒤 타격
- q. 홀드 및 히트

- r. 상대 선수의 다리를 붙잡고 1 개 이상의 타격 기술 시도하기
- s. 로프를 잡거나 무기로 사용 - *결과상을 입히기 위해 상대 선수 얼굴을 로프에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 t. 소극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는 행동
- u. 모욕적인 언어 또는 제스처 사용
- v. 마우스 피스 밖으로 반복적인 침 뱉기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
- w. 손가락으로 안구 누르기(아이 가우징)
- x.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 y. 깨물기 또는 침 뱉기
- z. 유도 기술이나 레슬링 서브미션

19. 아마추어 킥복싱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프로 킥복싱 파울에 관한 최소 기준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머리에 무릎 타격 금지
- 스피닝 백 피스트 금지

a. 초보 아마추어 부문(경기 경험 2 회 이하)

- 헤드기어 및 정강이 보호대 필수 착용

20. 신청 승인 후, 대회, 시합, 공개 시합 최소 10 일 전에는 뉴욕 주 체육 위원회(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에 공지해야 합니다.

\$20,000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Bond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we, _____, of
(Name of Sanctioning Entity, as applicable)

_____ of the City of _____, County of _____ and State
(Street and Number)

of New York, as principal, and _____, a corporation duly authorized to issue surety
(Name of Surety Company)

bonds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whose principal office is located at, _____,

_____ as surety are held and firmly bound unto 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in the sum of twenty thousand dollars, lawful mone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be paid to 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their attorney or assigns, for the payment of which, well and truly to be made, we bind ourselves, our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jointly and severally, firmly by these presents.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unto set our hands this _____ day of _____.

WHEREAS, the above named principal has made, or is about to make, application for an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license to engage in the oversight and conduct of authorized combative sport matches or exhibi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32 of the Laws of 2016, being an Act entitled, "AN ACT to amend the general business law, the tax law, and the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 in relation to authorized combative sports; and to repeal chapter 912 of the laws of 1920,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boxing, sparring, and wrestling": as amended; and

WHEREAS, said act provides, in part, that each such sanctioning entity shall execute and file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 bond in the sum of twenty thousand dollars (\$20,000), conditioned for and guaranteeing the payment of professionals' purses, salaries of club employees licensed by the commission, and the legitimate expenses of printing tickets and all advertising material.

NOW, THEREFORE, the condition of this obligation is such that, if the said principal shall well and truly pay all purses, all salaries of club employees licensed by the commission, all legitimate expenses of printing tickets and all advertising material during the term of the aforesaid license, then this obligation to be void; otherwise to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Principal - Name of individual Promoter or Promotional Entity)

By: _____
(Title - Printed Name)

(Signature of Principal)

(Surety - Name of Company)

By: _____
(Signature of Surety Company)

(Acknowledgment of Principal)

STATE OF _____, }

COUNTY OF _____, }ss.:

On this _____ day of (month) _____, (year) _____, before me, personally appeared _____, to me known or proved to me on the basis of satisfactory evidence, who, being by me duly
(Name of Signatory)

sworn, did depose and say that s/he resides/conducts business at _____; that
(Address of Residence/Business)

s/he is the _____ of _____; the entity described herein and which
(Title of Signatory, if applicable) (Name of Promotional business entity, if applicable)

executed the instrument and s/he acknowledged to me that s/he executed the same for the purposes therein mentioned or that s/he knows the seal of said entity; that the seal affixed to said instrument is such entity seal; that it was so affixed by the ord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aid corporation; and that s/he signed his/her name thereto by like order.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this _____ day of _____.

(Notary Public)

\$20,000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Bond

(Acknowledgment of Surety)

STATE OF NEW YORK, }
COUNTY OF _____}ss.:

On this _____ day of _____, _____, before me personally appeared _____, to me personally known, who, being by me duly sworn, did depose and say that s/he resides in _____; that s/he is the _____ of the _____ the corporation described in and which executed the within instrument; that by ord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aid corporation s/he signed his/her name thereto and said _____ further says that s/he is acquainted with _____ and knows him/her to be the _____ of the said corporation; that the signature of the said _____ subscribed to the within instrument is in the genuine handwriting of the said _____ and was subscribed thereto by like ord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presence of him/her the said _____.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this _____ day of _____, _____.

Notary Public
Commissioner of Deeds

INSTRUCTIONS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Business Law governing the licensing of the business given on the face of this bond are such that before a license can be issued the approved surety bond must be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The bond must be written, executed, acknowledged and approved before a filing can be accepted and must also bear a date with the effective date of the license when issued. To accomplish this, applicants would arrange with the surety company to have the contract of guaranty written on a conditional basis, so that it can be updated to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license applied for.

\$10,000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Bond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we, _____, of _____, of the City of _____, County of _____ and State _____ of New York, as principal, and _____, a corporation duly authorized to issue surety bonds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whose principal office is located at, _____,

_____ as surety are held and firmly bound unto 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in the sum of ten thousand dollars, lawful mone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be paid to 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their attorney or assigns, for the payment of which, well and truly to be made, we bind ourselves, our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jointly and severally, firmly by these presents.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unto set our hands this _____ day of _____.

WHEREAS, the above named principal has made, or is about to make, application for an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license to engage in the oversight and conduct of authorized combative sport matches or exhibit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32 of the Laws of 2016, being an Act entitled, "AN ACT to amend the general business law, the tax law, and the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 in relation to authorized combative sports; and to repeal chapter 912 of the laws of 1920,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boxing, sparring, and wrestling": as amended; and

WHEREAS, said act provides, in part, that each such sanctioning entity shall execute and file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 bond determined by the State Athletic Commission in the sum of ten thousand dollars (\$10,000), conditioned for and guaranteeing the faithful performance by said sanctioning entity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Athletic Commission.

NOW, THEREFORE, the condition of this obligation is such that, if the said principal shall well, truly and faithfully perform and execute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Athletic Commission during the term of the aforesaid license, then this obligation to be void; otherwise to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Principal - Name of Sanctioning Entity)

By: _____
(Title - Printed Name)

(Signature of Principal)

(Surety - Name of Company)

By: _____
(Signature of Surety Company)

(Acknowledgment of Principal)

STATE OF _____, }

COUNTY OF _____, }ss.:

On this _____ day of (month) _____, (year) _____, before me, personally appeared _____, to me known or proved to me on the basis of satisfactory evidence, who, being by me duly sworn, did depose and say that s/he resides/conducts business at _____; that

s/he is the _____ of _____; the entity described herein and which executed the instrument and s/he acknowledged to me that s/he executed the same for the purposes therein mentioned or that s/he knows the seal of said entity; that the seal affixed to said instrument is such entity seal; that it was so affixed by the ord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aid corporation; and that s/he signed his/her name thereto by like order.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this _____ day of _____, _____.

(Notary Public)

\$10,000 Authorized Sanctioning Entity Bond

(Acknowledgment of Surety)

STATE OF NEW YORK, }
COUNTY OF _____}ss.:

On this _____ day of _____, _____, before me personally appeared _____, to me personally known, who, being by me duly sworn, did depose and say that s/he resides in _____; that s/he is the _____ of the _____ the corporation described in and which executed the within instrument; that by ord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aid corporation s/he signed his/her name thereto and said _____ further says that s/he is acquainted with _____ and knows him/her to be the _____ of the said corporation; that the signature of the said _____ subscribed to the within instrument is in the genuine handwriting of the said _____ and was subscribed thereto by like ord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presence of him/her the said _____.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this _____ day of _____, _____.

Notary Public
Commissioner of Deeds

INSTRUCTIONS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Business Law governing the licensing of the business given on the face of this bond are such that before a license can be issued the approved surety bond must be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The bond must be written, executed, acknowledged and approved before a filing can be accepted and must also bear a date with the effective date of the license when issued. To accomplish this, applicants would arrange with the surety company to have the contract of guaranty written on a conditional basis, so that it can be updated to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license applied for.